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5.1.15.~2.24.

3) 행정규제 : 규제 강화(규제영향분석서 첨부)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86